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1997. 9.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조항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3. 주요내용

- 채무보증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채무보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발췌(사본) : 붙임

5. 제정 “안” :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공보게재내역 1부.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 및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④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구청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마. 상환계획		년간

3. 사유

- 가. 주채무발생
-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 라. 기타 참고 사항

4. 준수사항

-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중구청장

①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전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을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용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채권자

1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을
 5. 상 환 기 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완
 9. 기 타
 10.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제
호

채권자권한

울산광역시중구청장

91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5)

1. 의안명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7. 9. 29.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1997. 10. 13

라. 위원회상정 : 1997. 10. 18

3.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채무보증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채무보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관련법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라.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김진상)

-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주택은행에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 받을 시 자치구 이전에는 울산시장이 채무보증을 수행 하였으나,
- 자치구 출범으로 중구청장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 영세민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

5. 심사결과

- 원안가결